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영래, 백철현, 이성재, 김명석, 배명호, 이수경, 이화숙 의원

2. 제정이유
 ○ 저 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
 ○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 ·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～제2조)
 ·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, 특례보증, 이차보전의 근거 마련(안 제3조～제5조)
 ·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체결 시 보증재원 출연(안 제6조)
 ·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관계(안 제7조)
 ·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 관계(안 제8조)
 ·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～ 제15조)

4. 관련법령
 ○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22조
 ○ 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

5. 검토보고
 ○ 본 조례는 저 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로서,
 ○ 지역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실시해 서민경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 상공업 진흥을 이루기 위함이며,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